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운동부지도자 재계약 절차 부적정

**관계기관** 무원초등학교

**내 용**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업무매뉴얼」에 의하면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재계약 채용절차는 학교체육소위원회의 임용 검토를 거쳐 적격자를 학교장에게 추천하고 학교장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무원초등학교 학교체육소위원회 규정」 제2조(기능)에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임용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무원초등학교는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에 육상부 코치와 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체육소위원회 심의와 학교운영위원회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 ① 무원초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합니다.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 무원초등학교

**내 용**

### 1. 학교운영위원 출석 확인 누락

「경기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위원출석 등록부를 준비해 출석위원들의 서명을 받도록 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를 줌으로 개최할 경우 출석 서명을 대신하기 위해 참석자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화면을 캡처해 첨부해야 함에도, 수감기간인 2020년 8월 20일부터 2022학년도까지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2020학년도 제4회~제8회 임시회와 제2회 정기회, 2021년 제3회~제4회 임시회와 제1회~제2회 정기회의 참석자를 확인할 수 있는 출석위원 서명부나 영상화면 캡처를 첨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2. 심의 결과 미이송

「경기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가 폐회한 후에는 위원장이 안건 처리 결과를 담은 심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이송하도록 되어 있으나, 심의 결과를 이송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3. 안건 처리 절차 미준수

「경기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의 가·부결을 결정하기 위하여 투표(무기명, 기명) 거수표결 기립표결 등의 방법으로 찬성과 반대의 수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가결 혹은 부결로 선포해야 함에도, 2020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절차를 정확하게 준수하지 않고 안건을 가결 처리한 사실이 있다.

#### 4. 회의 개최 7일전 통보 소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회의 소집)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리고,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에 대해 회의 개최일을 제외하고 역산하여 7일이 되는 날 이전, 즉 8일 전 자정까지 도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무원초등학교는 2020학년도 제5회 임시회, 6회 임시회, 제2회 정기회, 제7회 임시회, 2021학년도 제1회 임시회, 제1회 정기회, 제2회 임시회, 제2회 정기회, 제4회 임시회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 ① 무원초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들에게 ‘주의’ 처분합니다.